

##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조례제정(안) 심사보고서

1992. 7. 8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2. 6. 30
- 다. 회부일자 : 92. 7. 7
- 라. 상정일자 : 92. 7. 8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 : 정부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독서 문화의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이동도서관 운영을 지원 정착시키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- 이동 도서관의 설치, 관리를 새마을 문고 중앙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함.
-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문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
-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.
- 도서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
- 운전기사 및 사서직 각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둠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국민 독서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달서구 관내를 순회하면서 독서 상담 및 건전도서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무상대여 함으로써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토론 요지

가. 찬 성

벌써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범 국가적 정책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우선 사업이냐하는 의문점도 제기되었으나 국민 독서 문화의 향상과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

찬성자 : 사회준, 양종학, 최학득, 류병노, 이장우, 손성태, 배영칠위원

나. 보 류

국민독서문화 향상과 독서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임에는 동의하지만 사회 복지 문제등 시급한 우선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보류하자는 의견

5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 부 : 제정조례(안) 1부.

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(이하 "이동도서관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설치, 관리) 이동도서관의 설치, 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지부(이하 "문고지부"라 한다)회장에게 위탁한다.

제 3 조 (사업)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
2. 독서상담 및 자문
3. 국민독서진흥운동
4.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, 연구 및 홍보
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.

제 4 조 (운영위원회)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
2.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
3.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

제 5 조 (예산 및 결산)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2개월 이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직원임용)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.

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.

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.

제 7 조 (지도, 감독)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, 운영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, 감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